
상해보험에 관한 연구

-질병으로 인한 의료처치 중 의료사고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ccident insurance : Focused on the medical accident during the medical treatment caused by the disease)

황정혜**
Junghye, Hwang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질병치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해당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상해사고 치료과정 중 발생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해보험에서 당연 담보책임이 발생하므로 논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질병치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상해보험에서 담보책임 발생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분쟁이 있다.

또한 과거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상해보험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사유를 달리 규정하고 있었으며, 손해보험사에서 판매된 상해보험이라 할지라도 판매시기에 따라 약관 개정이 되면서 면책사유도 달리 규정되어 있는 복잡한 특성이 있다.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질병치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상해보험자의 담보책임발생여부를 해석함에 있어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주요 대법원 판례 및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사례 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첫째, 의료사고 면책조항과 관련하여 손해보험에서의 약관 개정에 따른 동 의료사고 면책조항을 어떻게 해석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본 논문은 2018년 8월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법학석사(손해사정전공), 4종·신체손해사정사, 에프엠손해사정(주) 부산지사장
투고일: 2018. 08.02. 심사일: 2018. 08. 13. 게재확정일: 2018. 08. 23.

둘째, 의료사고 면책조항과 관련하여 관련 대법원 판례 및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등을 살펴보고, 질병치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의 상해보험에서 담보책임 발생여부에 검토해보았다.

질병사고의 치료목적으로 외과적 수술 등의 치료과정 중 발생한 손해가 구약관에서는 동 면책조항에 의해 보험자 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현행약관에서는 동 면책조항이 삭제되었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담보책임이 발생한다고 단순히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즉 질병사고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측의 예측 불가능하였던 의료사고와 같은, 외과적 수술 결과가 상해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상해보험에서는 상해사고로 인정되어 보험자의 담보책임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사고 면책조항을 보면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상해3요건에 해당한다면 면책조항의 단서조항이 적용되어 상해보험자의 담보책임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설명의무위반의 검토 및 그 밖의 의료처치 적용범위의 검토도 중요하지만, 면책조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질병치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해3요건에 해당된다면 면책조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상해보험자의 담보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론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연구논문을 통하여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인 상해사고의 요건과 의료사고 면책조항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보험금 분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국문 주제어 : 상해보험, 의료사고,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면책조항

I. 서론

상해위험이 증가된 사회에서 최근에는 외과적 수술 등과 같이 의료처치 중에 발생한 의료사고의 위험도 증가되고 있으며, 상해보험에서의 의료사고 담보여부로 인한 분쟁도 증가되고 있다.

먼저 상해사고의 기본 요건인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충족하는지 검토해보았다. 그리고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자 담보책임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면책조항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같은 손해보험의 상해보험이라도 의료사고에 대하여 시기에 따라 약관이 개정되어 면책조항을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판례 및 분쟁사례를 통해 검토해 보았다. 주요 검토점은 면책조항의 “그 밖의 의료처치” 적용범위와 “외과적 수술”, 면책조항에 대한 보험자의 약관설명무위반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면책약관의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면책조항을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의료사고 면책조항으로 사용하겠다.

II. 의료사고 면책조항과 상해보험 약관

1. 의료사고 면책조항

(1) 약관상 동 면책조항의 기본개념

-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면책조항의 정의

현행 약관 개정 전인 2010년 4월 21일 이전 舊약관에서는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규정하여 이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과 동일하게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질병 치료 목적으로 시행되는 외과적 수술, 의료처치 등의 경우는 피보험자가 의료처치의 위험성에 대하여 인지 혹은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담보에서 제외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를 상해보험에서 보험사고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상해보험에서 보험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전제로 성립하는데, 질병치료 목적의 외과적 수술 등은 피보험자가 예측하지 못한 우연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동 면책조항을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피보험자 등이 예견할 수 없었던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해보험에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시 되었으며, 동 면책조항이 적용되어 면책이 되는지가 분쟁이 된다. 상해사고의 치료과정 중 발생한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상해치료 중 발생한 것이므로 상해사고의 요건에 해당이 되며, 동 면책조항에서도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해치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2) 동 면책조항의 취지

이처럼 동 면책조항의 취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치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그러한 위험을 처음부터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고,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사고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보호를 부여하기 위한 것¹⁾’이라고 해석하였다.

보험의 기본원리를 생각하여볼 때 비담보 보험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가 비

1) 대법원 2014.04.10. 선고 2012다76553

록 담보손해라 하더라도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담보위험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책임이 발생도록 하는 것이 동 면책조항의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3) 동 면책조항의 문제제기

동 면책조항에 근거하여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외과적 수술을 받거나 그 밖의 의료처치를 받은 경우 보험자의 책임을 전부 면책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질병 치료 목적으로 수술, 검사 등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의료사고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동 면책조항을 근거로 하여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지 동 면책조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약관상 책임발생여부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질병·상해보험에서의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면책조항

(1)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상 동 면책조항의 변경

표준약관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약관 개정시기	약관 내용
2002년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u>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u>
2010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의 결과로 상해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동 면책조항 변경 취지

동 면책조항의 적용 범위에 따른 분쟁으로 2010년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舊약관의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4호의 규정에서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를 삭제하였다. 하지만 동 면책조항이 삭제되었다고 하여 상해보험에서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등이 모두 보험자의 담보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상해사고로 인한 외과적 수술의 경우에는 발생위험이 담보위험에 의한 보험사고이므로 보험자의 담보책임이 발생한다. 분쟁이 되는 질병사고의 경우 외과적 수술 중 발생한 손해의 경우에 비담보위험으로 인한 보험사고이므로 보험자의 담보책임이 문제시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질병사고의 치료목적으로 외과적 수술 등의 치료과정 중 발생한 손해가 구약관에서는 동 면책조항에 의해 보험자 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현행약관에서는 동 면책조항이 삭제되었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담보책임이 발생한다고 단순히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즉 질병사고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측의 예측 불가능하였던 의료사고와 같은, 외과적 수술 결과가 상해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상해보험에서는 상해사고로 인정되어 보험자의 담보책임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Ⅲ. 의료사고 면책조항에 관한 판례 및 분쟁조정결정 사례 연구

1. 동 면책조항에 대해 상해 보험 지급사유로 해석한 판례

(1) 약물부작용을 상해사고로 인정한 판례²⁾

2) 서울고등법원 2004.07.09. 선고 2003나37183 판결

가)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화재보험)와 상해보험체결하고,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을 진단 받고 치료위해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이하 이 사건 약물이라 함)을 복용하였으며,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 진단되어 양측 고관절 기능을 영구히 상실하게 된 사고가 발생했다. 치료 과정에서 복용한 스테로이드 계통 약물 부작용으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된 사실이 상해보험의 상해사고 해당 여부와 면책 약관 조항인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의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나) 법원의 판결근거

1)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 해당여부

‘급격성’은 반드시 사고가 시간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예견할 수 없었던 순간에 사고가 생긴 것을 말하는데, 약물복용의 부작용으로 인한 상해는 약물복용의 효과가 계속 누적됨으로써 어느 시점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부작용을 예상할 수 없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급격하게 상해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는 등의 경로를 통해 이러한 약물부작용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는 사고의 급격성이 인정된다.³⁾⁴⁾ 원고는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의 치료를 위해 의사 처방에 따라 스테로이드 계통 약물을 장기간 복용 할 경우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예견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⁵⁾

3) 서울고등법원 2004.07.09. 선고 2003나37183 판결 본문참조

4) 생명보험회사의 상해보험 약관을 보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재해’를 담보하면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화학적 물질(Y40~Y59)’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보험사고로 담보하고 있다.

5) 서울고등법원 2003나37183 판결참조) 현재까지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과 무혈성 괴사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의학적인 보고는 없으며, 다만 그 치료를 위하여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을 복용할 경우에 혈류장애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확률은 전체 투약자의 10내지 40%정도 된다. 서울고등법원 2003나37183 판결

2) 질병 또는 의료처치로 인한 것인지 여부

면책조항인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의료처치과정에서 일정한 정도의 위험이 수반되고, 피보험자 또는 그 가족의 예견과 동의 아래 그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에 정한 ‘그 밖의 의료처치’라고 함은 마취제의 투약처럼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에 상응할 정도로 신체에 대한 위험이 따를 것이 예견되는 외과적·내과적 의료처치만을 의미하고, 이 사건과 같이 의학적 연관성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보통 사람으로서는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치료약 복용의 부작용으로 생긴 상해는 위와 같은 의료처치와 구분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⁶⁾

따라서 면책조항의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해석의 적용범위를 판단하는 중요 판결이 되겠다.

(2) 스테로이드제 투약에 의한 무혈성 괴사와 동 면책조항⁷⁾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건강보험계약 가입이후 성상세포종 진단을 받고 두부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며, 심한 뇌부종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제를 처방받았다. 이후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으로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지급 거절하여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나) 분쟁조정결정근거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그 밖의 의료처치’라 함은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에 상응할 정도로 신체에 대한 위험이 따를 것이 예견되는

6) 서울고등법원 2004.07.09. 선고 2003나37183 판결 본문참조

7) 금융감독원, 13.05.28, 분쟁조정례 제2013-15호, 686면

외과적·내과적 의료처치를 의미한다고 판결⁸⁾을 고려하면 질병의 치료라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약물 부작용의 위험가능성을 전혀 예견할 수 없는 단순한 경구 투약 등의 처방 정도를 약관상 면책조항인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즉 “의료처치” 면책조항 적용범위에 대하여 외과적 수술에 상응할 정도로 신체에 대한 위험이 따를 것이 예견되는 외과적 내과적 의료처치를 의미한다는 판례 등을 참조하여 질병치료라 하더라도 약물 부작용으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따른 위험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는 단순한 경구 투약 등의 처방정도를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건강검진 수면내시경 검사 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하여 상해보험 의료 사고 면책조항 적용여부 판결⁹⁾

가) 사실관계

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위검사 시작 후 약 5분 만에 호흡부전 및 의식불명상태가 되어 결국 사망하였다. 부검감정서상 사망원인은 마취제인 프로포폴의 호흡억제 작용으로 인한 저산소증 발생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본 사망사고와 상해보험의 의료사고 면책조항 여부에 대한 판결이다.

나) 법원의 판결근거

신체의 상해나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에 기한 상해가 아니라 순수한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에 기하여 발생한 상해는 이 사건 면

8) 서울지법 2008.06.11. 선고, 2007가합113569

9) 대법원 2014.04.30. 선고 2012다76553 판결

책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¹⁰⁾

즉, 종합건강검진을 위하여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검사 시작 5분 만에 프로포폴의 호흡억제 작용으로 호흡부전 및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에 기한 손해가 아니라 건강검진 목적으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아가 마취제로 투여된 프로포폴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¹¹⁾

대법원 판결은 상해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의 범위를 한층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즉, 상해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 중 하나인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는 상해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에 기한 상해를 의미하는 것이며, 설사 위험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니라 건강검진 목적으로 검사를 받던 중에 사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본 판결의 의의가 되겠다.¹²⁾

(4) 사랑니 발치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¹³⁾

가) 사실관계

치과에서 좌측 제3대구치의 발치 중 신경이 손상되어 좌측 혀부분에 감각 저하가 발생하였다. 신경계의 처치 후 장애(좌측 혀 감각이상)로 진단받아, 좌측 설신경 감압법 및 좌측 비복신경 이식술을 받고, 치과 원장은 동 사고가 의료사고임을 확인하는 재해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였다. 이견 사고에 대해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사랑니 발치 수술은 상당한 위험이 내재된 외과수술로서 신청인이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어 상해의

10) 대법원 2014.04.30. 선고 2012다76553 판결

11)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민원업무매뉴얼(제3보험편)」, 2016. 431면

12) 법무법인태평양, “보험법 개정안 및 보험관련 대법원 판례 소개”, 「최신판례해설」, 2014.16, 4면

13)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 08.03.25 결정 제 08-27호 675면

요건인 우연성을 결하고 있어 동 의료사고를 상해사고로 보기 어렵고, 설령 동 의료사고를 상해사고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약관상 면책사유인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한다고 면책처리하자 부당하다며 민원 제기한 사건이다.

나) 분쟁조정결정근거

해당 보험약관에서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신청인이 입은 설신경 손상은 사랑니 발치 과정에서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신청인이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랑니 발치를 담당한 의사도 동 사고가 의료사고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사고는 우연한 사고로 상해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이 타당할 것이다. 담당의도 정상적인 행위가 아닌 의료사고임을 인정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우연성이 충족되어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인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상해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보험약관 면책조항 단서에 의하면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사고가 상해사고에 해당하는 이상 동 단서에 의해 보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본 사고건은 상해사고에 해당하므로 상해보험 약관의 면책사유인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단서조항인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에 의하여 결국 보험자의 담보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즉, 본 분쟁조정례에서는 질병사고의 의료사고일지라도 상해사고의 담보요건을 충족한다면 면책조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보험자의 담보책임이 발생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2. 동 면책조항에 대해 상해 보험 부지급사유로 해석한 판례

(1) 의료사고의 상해보험 상해사고 인정여부 판결 14)

가) 사실관계

병원에서 CT촬영결과 후복막강에서 종괴가 발견되어 종양절제 수술을 받았다가 감염으로 인하여 상세불명의 패혈증과 폐렴을 원인으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본 사고가 상해보험의 상해사고에 해당하는지 면책조항의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해당여부가 쟁점이다.

나) 법원의 판결근거

본 판례의 사고는 복암맘 진단 후 종괴 제거하기 위한 개복수술 받았으나,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감염으로 결과적으로 사망한 사고이다. 본 사고건은 피보험자가 개복 수술에 대해 동의를 하였다고 하여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의 결과에 대해서까지 동의하고 예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우연한 사고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본 사고건은 상해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고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질병인 암의 치료를 위한 개복수술로 인해 증가된 감염의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발생했다”며 면책조항이 적용되어 보험자의 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해보험약관은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취지의 면책조항을 포함하고 있다.(제7조 제1항 제6호). 위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이하 “외과적 수술등”이라고 한다.)가 행하여지는

14) 대법원 2010.08.19.선고 2008다78491판결

경우,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그러한 위험을 처음부터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고,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사고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보호를 부여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후복막악성신생물(복막암) 진단을 받아 후복막강 종괴를 제거하기 위한 개복수술을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감염으로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한 본 사고는 원고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인 암의 치료를 위한 개복수술로 인하여 증가된 감염의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판시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기여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취지의 면책조항의 내용 중에 본문에 해당하여 면책이 되는지 아니면 후단에 해당하여 그럼에도 보험자의 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지의 여부¹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2) 스테로이드제 투약에 의한 무혈성 괴사와 인과관계¹⁶⁾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두드러기로 인한 피부과 통원치료를 받은 이 후 2년 8개월 뒤인 좌 고관절 인공치환술 받았다. 이와 관련 상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나) 분쟁조정결정근거

스테로이드제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무혈성 괴사가 발생한 본 청구 건이었다.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에 의한 부작용의 경우 약물을 계속적으로

15) 최병규, 의료과실과 상해보험보험사고, 기업법연구제27권제4호, 한국기업법학회, 2013.12, 372면

16) 금융감독원, 12.07.24, 분쟁조정례 제2012-19호, 681면

장기간 복용함으로써 그 효과가 계속 누적되어 나타나는데, 일반인의 입장 입장에서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보험약관상 상해사고의 요건인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면책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밖의 의료처치’는 앞서 열거된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에 상응할 정도로 신체에 위험이 따를 것이 예견되는 의료처치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본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약물복용후 2년 8개월 뒤에 진단된 무혈성괴사와 약물복용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험자의 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약물부작용과 신체손상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보험사고로 인정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본 건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담보책임이 발생되지는 않았으나, 스테로이드제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상해사고에 해당함과 면책조항의 ‘그 밖의 의료처치’에 대한 해석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4)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보험의 보험사고¹⁷⁾

가) 사실관계

피보험자 갑은 등산 중 사고로 요추 염좌, 급성기관지염 진단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하였고, 입원 중 호흡곤란 시작되어 심인성 쇼크,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사망종류는 ‘병사’로 기재되어 있고, 사망의 직접 원인은 ‘심인성 쇼크’, 중간 선행 사인으로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작성되어 있다. 피보험자측 유족은 병원을 상대로 주치의의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60% 배상책임(의료과실)을 지

17) 금융감독원, 11.04.26, 분쟁조정례 제2011-28호, 698면

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 해당 의료분쟁의 판결내용을 보면 주치의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급성 심근경색 진단에 필요한 추가 치료나 검사 시행 없이 기관지염에 필요한 치료만 시행하여 피보험자가 결국 사망한 것으로 보고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분쟁조정결정근거

이건 관련 의료분쟁의 판결내용(광주지방법원 2010가합189)에 따르면, 주치의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심근경색 진단에 필요한 추가검사 시행 없이 급성 기관지염 치료만을 시행하여 피보험자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의료과실이 상해사고에 해당되려면 상해보험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인데 상해보험에서의 ‘외래의 사고’는 ‘명백히 가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부에 있는 사고’에 기인하는 것¹⁸⁾이다. 이 건 사고는 사망사인인 심근경색과 관련하여 수술 또는 의료처치를 하다가 사망이라는 상해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외부적 작용 없이 주치의의 주의의무 위반 및 부작위 등에 기인한 의료과실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는 바, 이러한 주의의무위반의 의료과실까지 ‘외래의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건 의료사고는 사망사인과 관련하여 수술 또는 의료처치 등의 외부적 작용 없이 주치의의 주의의무 위반 및 부작위 등에 기인한 의료과실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이므로, 보험약관상 상해사고 요건에서 규정하는 ‘외래의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 상해사고에 대한 입증책임¹⁹⁾은 보험금 청구권자가 부담하는데, 사망에 대한 외부적 요인의 입증이 어렵다면 본 사고 건은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해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이다.

18) 대법원 2006.2.10. 선고 2005다58083

19) 대법원 2001.08.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3. 면책조항과 설명의무위반

(1)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 면책조항 관련 설명의무위반 판결 검토 20)

가)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복부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장파열 의심되어 장 유착 박리술 등의 수술 후 호전되던 중, 지남력이 떨어지거나 미열, 백혈구 상승, 황색포도상 구균 배양 등의 증상을 보였으나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구강섭취를 격려하였다. 이후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지자 기관삽관술 시행하였고, 흡인성 폐렴 치료를 하였으나, 허혈성 뇌손상과 다 장기 부전 등으로 치료 받던 중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에게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러한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에서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여부와 면책조항 적용여부, 그리고 면책 약관조항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여부에 대하여 검토해보았다.

나) 법원의 판결근거

2010.04.21. 이전 舊약관에서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는 면책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면책조항의 내용을 보험계약 체결 시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보험업법 등에서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 시에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과적 수술 등으로

20) 대법원 2013.06.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

이한 상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므로, 보험회사는 계약 체결시 이를 설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동 판례에서도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개입되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금융감독원이 정한 표준약관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었다거나 국내 각 보험회사가 위 표준약관을 인용하여 작성한 보험약관에 포함되어 널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에게 명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²¹⁾’라고 판시하여 동 면책조항의 내용이 설명의무대상임을 명확히 하였다.²²⁾

IV. 의료사고면책약관의 적용

1.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상해보험에서 보험자의 책임을 구체화시키는 보험사고의 요건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3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상해 사고와 발생된 피보험자의 신체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한다.

이러한 상해 사고와 신체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 측에게 있어 입증의 어려움이 있으나, 법원은 민사 분쟁에서 ‘인과관계’의 판단은 의학적·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를 의미하며 반드시 의학적·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²³⁾이다.

21)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민원업무매뉴얼(제3보험편)」, 2016. 433면

22) 박은경, “표준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약관설명 의무 면제대상인가”, 「법학연구」, 제52권, 한국법학회, 2013.12. 331면

즉 일반 경험칙상 사고의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면 그 원인과 결과 사이의 ‘사회적·법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엄격한 의학적 과학적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상해보험의 의료사고 면책약관

본 연구는 면책사유 중에서도 의료사고 발생 시에 적용되는 상해보험에서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면책조항에 대하여 검토해보았다. 면책조항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및 인과관계 성립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약관에 따라 “외과적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면책약관을 두어 적용범위의 해석에 있어 분쟁이 야기되었다. 가령 약물복용도 그 밖의 의료처치에 적용되는 범위로 볼 수 있는지 분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의 경우 현행 약관 개정 전인 2010년 4월 21일 이전 舊약관에서는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과 동일하게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질병 치료 목적으로 수술, 검사 등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의료사고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피보험자 등이 예견할 수 없었던 의료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도 동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가 분쟁이 된다.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였거나 그 밖의 의료처치를 하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모두 동 면책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질병사고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측의 예측 불가능하였던 의료사고와 같은, 외과적 수술 결과가 상해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상해보험에서는 상해사고로 인정되어 보험자의 담보책임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23) 대법원 2008. 4.24.선고 2006다72734판결

서울고법 2003나37183판결 및 금감원분쟁조정례 제2013-15호에 따르면 면책조항의 “그 밖의 의료처치”에 대한 해석을 마취제 투약처럼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에 상응할 정도로 신체에 위험이 따를 것으로 예견되는 의료처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약물 경구투약의 경우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약물부작용에 따른 의료사고를 상해보험자의 담보책임을 인정하여 “그 밖의 의료처치” 범위의 해석을 명확히 하였다.

대법 2012다107051 판결은 동 면책조항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질병 치료위해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예상하기 힘든 약관조항이므로 보험자의 약관설명 의무가 발생되며, 설명의무 위반시 보험자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의료사고의 담보사고, 면책조항 관점이 아닌 약관설명 의무관점에서 접근하여 보험소비자의 보험보호를 두텁게 해석하였다.

V. 결론

상기에서 검토한 것처럼 질병치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해보험자의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개별적 사안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즉 질병치료 중 발생된 의료사고라도 피보험자가 치료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동의가 의료사고의 결과에 대해서까지 동의하였다고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상해 3요건을 판단하여 보험사고인 상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현행 손해보험 약관에서는 동 면책조항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면책조항이 삭제되었다고 구약관과 신약관에서 의료사고의 책임발생 여부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사안에 따라 상해사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 상해사고의 3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면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인 상해에 해당할 것이다.

의료사고 면책조항을 보면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상해3요건에 해당한다면 면책조항의 단서조항인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적용되어 상해보험자의 담보책임이 발생된다고 주장하고 싶다. 설명의무 위반의 검토 및 그 밖의 의료처치 적용범위의 검토도 중요하지만, 면책조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질병치료중 의료사고라도 상해3요건에 해당된다면 면책조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상해보험자의 담보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론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민원업무매뉴얼(제3보험편), 2016.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사례집(보험), Vol.2, 금융감독원, 2013.12
- 유관우, 이현열, 인보험약관해설, 도서출판엘림지엔피, 2006.
- 한창희, 보험법, 국민대학교출판부, 2017.
- 박은경, 표준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약관설명 의무 면제대상인가, 법학연구 제52권, 국법학회, 2013.12.
- 법무법인태평양, 보험업법 개정안 및 보험관련 대법원 판례 소개, 최신판례해설, 2014.16.
- 최병규, 의료과실과 상해보험 보험사고, 기업법연구 제27권제4호, 한국기업법학회, 2013.12.

Abstract

In this paper, we are going to examine whether or not a medical accident occurs during disease treatment. Medical accidents that occur during the process of treating injuries are not controversial as the liability to collateral arises from the injury or illness. However, there is a dispute over whether or not a security liability will arise from injury or illness.

In addition, the reasons for exemptions for medical accidents were different in the past, and the reasons for exemptions are complicated as they are amended according to the time of sale. This complexity leads to disputes in interpreting whether or not a person is responsible for collateral for medical accidents that occurred during disease treatment. Therefore, we are going to consider major Supreme Court cases related to this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cases for dispute settlement.

First, the medical accident exemption clause is reviewed for how to apply the same medical accident exemption clause in connection with the modifica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in the loss insurance.

Second, we examined relevant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disputes concerning the exemption of medical accidents, and examined the occurrence of collateral liability in the accident compensation for medical accidents caused during disease treatment.

The loss incurred during the course of treatment, such as surgical operations, for the purposes of the medical accident is interpreted by the Old Testament as not to be liable for insurers' collateral, but simply because the current policy has been deleted.

In other words, in case of a disease accident, if the results of a surgical

operation, such as an unpredictable medical accident on the insurer's part, are met with a minor and accidental external accident, then the insurance policy is regarded as an injury.

And if you look at the medical accident exemption clause, you can say, "Betting the insured, giving birth (including the cesare), abortion or surgical operation, and other medical treatments. However, in the case of injury caused by the company, we will compensate the company." If the conditions are met, I would argue that the clause of the exemption applies to the liability of the indemnifying party. Review of non-explanatory review and other coverage of medical treatment are important, but it is considered reasonable for a medical accident caused during disease treatment under the clause.

Through such research paper, it will help reduce the claims dispute by reviewing the requirements of the accident, insurance accident, and exemption from medical accident.

**※ Key words : Accident insurance, Medical accident, Surgical surgery,
Other medical treatments. excluded clause**